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세칙

제정	2001.12.31	총재결제	금결	5011 - 610
개정	2002. 2.21	총재결제	금관	5011 - 38
	2002. 7.22	총재결제	금결	5011 - 350
	2002. 9.25	총재결제	금결	5011 - 471
	2003. 6.24	총재결제	금관	5011 - 117
	2003.10.10	총재결제	금결	5011 - 424
	2003.12.26	총재결제	금결	5011 - 573
	2004. 6.24	총재결제	금결	5011 - 328
	2004. 9.24	총재결제	금결	5011 - 532
	2005. 3.14	총재결제	금결	5011 - 117
	2005. 9. 1	총재결제	금결	5011 - 557
	2006. 8.24	총재결제	결제안정팀-	119
	2006.12.20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671
	2007. 3. 9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137
	2007.10.16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541
	2007.12.14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1244
	2008. 1.25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86
	2008. 7. 9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365
	2008.10. 9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609
	2009. 1.22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77
	2009. 3.26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161
	2009. 4. 3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342
	2009. 5.25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280
	2009.12.16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885
	2010. 1.26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110
	2010.11. 4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600
	2010.12.23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743
	2011. 2.22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114
	2011.11.18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1355
	2012. 2. 3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133
	2012.12.27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1777
	2013. 7.11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373
	2014. 3.27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83
	2015.11.26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600
	2016. 2.25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119
	2016.11.24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598
	2017.12. 7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602
	2018.12.20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576
	2020. 4. 9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202
	2020. 6.25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393
	2020. 9.10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617
	2022. 3.25	총재결제	결제운영팀-	195
	2022.10.27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685
	2023. 1.16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53
	2023. 2. 8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131
	2023. 4.11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334
	2023. 7.27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699
	2023. 8.25	총재결제	결제정책팀-	769
	2024. 3.29	총재결제	결제안정팀-	1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공개시장운영규정」(이하 “시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체의뢰기관”이란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외화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외화예수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당좌예금계좌”라 한다)를 통한 자금이체를 한국은행에 의뢰하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을 말한다.
2. “수취기관”이란 이체의뢰기관의 이체자금을 수취하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을 말한다.
3. “수취인”이란 이체의뢰기관이 수취기관을 통해 이체자금을 수취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의견수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관련내용의 사전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제1절 한은금융망 참가 및 운영 기준

제4조(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및 차액결제 참가기준) ① 규정 제6조제2항의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은금융망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한국은행 업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자금중개, 은행공동망 참여, 증권결제 등과 관련하여 한은금융망 이용이 불가피한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표 5>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기관인 경우 그 필요성이 없어진 이후에는 즉시 <별표 5>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3. <별표 5>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하다고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이하 “금융업무실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규정 제6조제4항제4호의 차액결제 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직전 분기말(직전 분기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분기말로 한다) 기준으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총자본비율(신설기관의 경우 차액결제 참가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말의 예상비율로 한다)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2. 신청일 직전월(직전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로 한다) 기준으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신설기관의 경우 차액결제 참가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 마지막 월의 예상비율로 한다)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3.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제5조(가입 및 탈퇴) ① 한은금융망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가입신청서와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업무실장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입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가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업무실장은 가입 승인을 받은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가입기준 충족여부를 재평가하며,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한다) 중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차액결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참가신청서와 차액결제에 관한 약정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④ 금융업무실장은 제3항의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정 제6조제4항의 요건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참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참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또는 차액결제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탈퇴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2항, 제6조 및 제91조제2항에 따른 가입약정 해지 기관 또는 제5항에 따른 탈퇴 기관은 약정 해지 또는 탈퇴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한은금융망에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한은금융망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참가기관을 통하여 한은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참가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금융업무실장은 참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입기준의 충족여부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가입기준 미충족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미충족 1~2회 발생 : 가입기준 충족방안의 강구 요구 및 대표이사와 감사 앞 통보
2. 미충족 3회 발생 : 한은금융망 탈퇴 권유
3. 미충족 4회 발생 : 한은금융망 가입약정 해지

② 금융업무실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차액결제에 참가한 기관(이하 “차액결제참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기준의 충족여부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차액결제 참가기준 충족방안의 강구 요구, 차액결제 탈퇴 권유, 관련 약정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 ① 한은금융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하 “금융결제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용신청서, 규정 제7조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약정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결제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규정 제37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와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최종결제를 할 경우 한은금융망의 운영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은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이용종료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콜거래중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연계) ① 규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콜거래중개시스템을 한은금융망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약정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약정서에는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 연계에 따른 콜거래중개시스템의 운영기준 및 장애대책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제8조(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등록사항) ①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한국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1. 송신권한자
2. 전용단말기 및 통신회선(재해복구 통신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융업무실장이 정하고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은 한국은행 IT전략국장(이하 “IT전략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규정 제9조에 따라 참가기관이 부담하는 한은금융망의 이용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한은금융망과의 접속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는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이용기관 또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한은금융망과 연계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한국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한은금융망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동 통신회선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외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규정 제5조의 한은금융망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전산망의 통신회선 사용료는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은행과 참가기관이 분담할 수 있다.

④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은 한은금융망과의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자기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제2항의 통신회선에 대한 유지정비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부담하는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및 부대비용과 그 비용 등의 수취방법은 한국은행과 CLS은행간에 체결하는 한은금융망 이용약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자금결제상황의 파악) 금융업무실장은 참가기관의 자금결제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업무지속성 확보대책) 규정 제14조제1항의 한은금융망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황별 대응절차
2.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3. 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4. 모의훈련의 실시
5.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6. 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

제12조(장애발생시의 조치 등) ①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은 한은금융망의 장애 또는 장애로 판단되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하고 제11조의 한은금융망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에서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 관련부서장은 참가기관 또는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으로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안상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준 후에 해당 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를 취한 한국은행 관련부서장은 이를 즉시 금융업무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운영시간) ①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이체,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와 국채의 발행·상환을 위한 전문 입력의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은 각각 오전 9시 및 오후 5시 30분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 지역본부 관할 내 참가기관 결제모점의 자금이체를 위한 전문 입력 종료시각은 오후 5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금이체 신청전문 입력 종료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중당좌대출 상환: 오후 5시 50분
2. 자금조정예금 입출금: 오후 6시
3. 동절기(10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다음 해 3월 마지막 일요일까지로 한다)에 CLS은행이 이체의뢰기관이거나 수취기관이 되는 자금이체(이하 “CLS결제”라 한다) 및 그 자금이체와 관련된 일중당좌대출의 상환: 오후 6시 30분. 다만, CLS결제와 관련된 자금조정예금 입출금은 오후 6시 40분으로 한다.
4. 국채발행대금 입금: 오후 3시 50분
5. 일시 결제부족자금 신청: 오후 4시
6. 일시 결제부족자금 상환: 오후 5시 5분
7. 전자단기사채의 상환을 위한 증권·대금동시결제 신청: 오후 2시 20분
8.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신청 : 오후 5시
9. 국고금 납부를 위한 당좌예금차기 신청 : 오후 4시
10.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 간 연계결제(이하 “연계결제”라 한다) 신청 : 오후 5시
11. 증권대금동시결제를 위한 자금이체 신청(한국은행과의 증권 환매조건

부 매매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이체 신청을 포함한다) : 오후 5시 20분

③ 금융업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각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간 중에는 참가기관 및 취급대상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전문 입력 종료시각의 변경은 오후 5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의 관할 지역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한은금융망의 장애
2.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참가기관의 전산장애 및 시중자금 경색 등으로 대규모 또는 다수의 자금결제가 지연되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사유로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참가기관은 발생원인, 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금융업무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참가기관의 한국은행 당좌예금잔액 등에 대한 조회업무와 규정 제5조제2항의 업무 중 한국은행 대출 관련자료의 송수신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은금융망의 이용시간은 한국은행 관련부서장이 IT전략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금융업무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참가기관협의회) ①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관련 책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업무실장이 IT전략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의2(참가기관 앞 자료제공)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효율적인 결제유동성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에 해당기관의 결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업무개발)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한국은행 부서장은 금융업무실장의 동의를 얻어 IT전략국장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 또는 변경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의뢰 부서장은 해당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제2절 당좌예금계좌별 처리대상업무

제16조(당좌예금계좌별 처리대상업무의 구분) ①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② 한국은행은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를 일반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참가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1. CLS결제
 2. 차액결제
 3. 참가기관 간 일반자금이체
 4. 콜자금 이체
 5.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6. 한국은행과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대금 결제
 7. 증권·대금 동시결제
 8.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이용기관과의 증권 매매대금 결제
 9. 연계결제
 10.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및 상환. 다만,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에 따라 동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 ④ 제1항의 업무 중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참가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17조(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① 참가기관은 자신의 일반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잔액 부족으로 인한 대기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참가기관은 자신의 일반당좌예금계좌에서 다른 참가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또는 자신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 다른 참가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신청할 수 없다.

③ 한국은행은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문 입력의 종료시각 및 동 종료시각 이후에 일중당좌대출 및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참가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 간에 잔액을 이체할 수 있다.

제3절 일반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제1관 일반자금이체

제18조(자금이체의 신청) ① 참가기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자금이체를 그 날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한정하여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참가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외화자금 예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가기관은 일반당좌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자금이 차액결제시점에 이체되도록 하는 예약자금이체를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이체 신청의 대기) ① 한국은행은 자금이체 신청을 처리할 때 이체의뢰기관의 일반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체 신청을 대기파일에 수록하였다가 부족자금이 입금되면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선순위 대기 중인 거래의 자금이체 신청 때문에 결제가능한 후순위 대기상태의 자금이체 신청까지 미결제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결제가능한 후순위 대기를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먼저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가 원활히 종료될 수 있도록 차액결제자료 입력 후부터 차액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금이체 신청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이체의뢰기관이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입력종료시각까지 부족자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상태에 있는 해당 기관의 자금이체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자금이체 신청의 취소) ① 이체의뢰기관은 자금이체 신청이 한국은행에 수신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이체의뢰기관의 일반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자금이체 신청이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은행은 이체의뢰기관의 예약자금이체신청이 차액결제시점에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착오이체자금의 반환) 이체의뢰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수취기관이 아닌 다른 참가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그 이체자금을 수취한 참가기관은 즉시 원상회복을 위한 반대거래를 해야 한다.

제2관 국공채 등의 거래관련 대금결제

제22조(대금결제방식) ①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또는 국공채를 인수하는 참가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에서 그 인수대금을 인출하고 해당 기관 앞으로 증권을 등록하거나 실물로 교부한다.

②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이 등록된 통화안정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양수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대금을 양수기관과 양도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에서 대체결제한다. 다만, 양도 청구기관이 해당 증권에 대한 명의변경등록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등록된 통화안정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환매 및 상환 대금을 해당 기관의 일반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한국은행은 참가기관과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대금 및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업무 이용기관과의 증권 매매대금을 해당 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결제자금 부족 시의 처리)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일반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여 통화안정증권 또는 국공채의 인수 및 등록된 통화안정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양수도 청구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4조(손해배상) 참가기관은 통화안정증권 또는 국공채 등을 환매하거나 상환할 때 허위 또는 오류전문의 입력으로 한국은행의 원천징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원천징수과부족금을 정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액을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배상해야 한다.

제4절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제1관 CLS시스템결제

제25조(결제계좌) CLS결제자금은 CLS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이하 “CLS은행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결제할 수 있다.

제26조(입금 및 지급) ① CLS은행으로부터 원화자금의 납입(pay-in)을 통보받은 CLS은행 결제회원(비거주자인 CLS은행 결제회원의 원화자금 결제를 대행하는 참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참가기관은 CLS은행이 지정

한 납입완료시각까지 그 자금을 CLS은행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CLS은행의 자금이체 신청에 따라 CLS은행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 해당 원화자금을 지급(pay-out)받는 CLS은행 결제회원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27조(결제자금 부족 시의 처리) 한국은행은 CLS은행의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제26조제2항의 자금이체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동신청을 거절하고 그 내용을 CLS은행에 즉시 통지한다.

제28조(처리결과의 통지) 한국은행은 제26조에 따라 CLS결제자금이 CLS은행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 납입된 때와 CLS은행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부터 지급된 때에는 해당 납입 및 지급 내역을 이체의뢰기관과 수취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제29조(착오이체자금의 처리) 다른 참가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CLS은행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과 관련한 처리절차는 한국은행과 CLS은행 간에 체결하는 한은금융망 이용약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기본정보의 제공) CLS은행 결제회원인 참가기관과 비거주자인 CLS은행 결제회원의 원화자금 결제를 대행하는 참가기관은 자신의 은행식별코드(BIC)와 자신이 원화자금 결제를 대행하는 비거주자인 CLS은행 결제회원의 은행식별코드를 자신을 통한 결제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제31조(비상시 업무처리 등) 한은금융망을 통한 CLS결제자금 납입 또는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결제업무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과 CLS은행 간에 체결하는 한은금융망 이용약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2관 차액결제

제32조(차액결제 대상거래) 규정 제8조에 따른 차액결제 대상거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한은금융망의 참가기관 간 거래 및 그 거래에 따른 자금조정으로 한다.

1. 어음교환시스템(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지로시스템
3.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4. 타행환공동망

5. 직불카드공동망
6.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7. 지방은행공동망
8.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9. 전자금융공동망
10.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11. 국가간공동망

제33조(지정처리시점) ①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차액결제와 관련된 지정처리시점과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콜자금 이체 및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등과 관련된 지정처리시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지정처리시점이 같은 경우 그 처리순서는 금융업무실장이 정한다.

제34조(차액결제자료의 송신) 금융결제원은 제32조 각 호의 차액결제 대상 거래에 대한 차액결제 신청자료를 <별표 2>에서 정하는 해당 거래의 차액결제시점 1시간 전까지 한국은행에 송신해야 한다.

제3관 일반자금이체

제35조(자금이체의 신청) ①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체는 그날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인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참가기관은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 다른 참가기관에 자금이 특정시점에 이체되도록 하는 예약자금이체를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참가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자금이체를 신속지급지시 또는 보통지급지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후 5시 이후에는 신속지급지시로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신속지급지시”란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자금이체 신청을 처리하도록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에 의뢰하는 자금이체 신청전문을 말하며, “보통지급지시”란 서로 이체의뢰기관 또는 수취기관이 되는 참가기관들의 자금이체 신청을 모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한국은행에 의뢰하는 자금이체 신청전문을 말한다.

⑤ 참가기관은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 다른 참가기관에 자금이 차액결제시점에 이체되도록 하는 예약자금이체를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서 신속지급지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순지급한도의 설정) ① 이체의뢰기관은 자신의 보통지급지시 처리에 따른 결제전용당좌예금의 일중 순자금유출액의 상한(이하 “순지급한도”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중 순자금유출액”은 그날 중 처리된 이체의뢰기관의 보통지급지시 누계금액에서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신속지급지시 및 보통지급지시 누계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순지급한도는 이체의뢰기관이 다른 참가기관 각각에 대하여 설정하는 “양자간순지급한도”와 다른 모든 참가기관을 합하여 설정하는 “총순지급한도”로 구분한다

제37조(신속지급지시의 처리) ① 한국은행은 이체의뢰기관이 신속지급지시로 자금이체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한다. 다만, 해당 이체의뢰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거나 해당 이체의뢰기관이 앞서 신청한 신속지급지시가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은행은 즉시 처리되지 않은 이체의뢰기관의 신속지급지시를 대기파일에 수록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예약자금이체가 신속지급지시로 신청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예약처리시점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보통지급지시의 처리) ① 한국은행은 이체의뢰기관이 보통지급지시로 자금이체를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급지시를 대기파일에 수록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예약자금이체가 보통지급지시로 신청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예약처리시점에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대기파일의 관리) ① 한국은행은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한 각 이체의뢰기관의 자금이체신청이 대기파일에 수록되는 시간에 따라 대기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신속지급지시는 보통지급지시에 우선하여 대기순위를 부여한다.

② 이체의뢰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체의뢰기관은 제1항의 대기파일에 수록된 자금이체 신청의 지급지시 유형을 오후 5시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증권·대금 동시결제,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예약자금이체의 지급지시 유형은 변경할 수 없다.

④ 한국은행은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기관의 대기파일에 수록된 보통지급지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지급지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대기상태인 자금이체 신청의 처리) ① 한국은행은 결제전용당좌예

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신청 중 대기상태에 있는 자금이체 신청을 모두 모아 각 이체의뢰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 및 제36조에 따른 순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동시에 처리(이하 “다자간동시처리”라 한다)한다.

② 한국은행은 대기상태에 있는 신속지급지시를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 자금이 입금되거나 신속지급지시의 최우선 대기순위가 바뀌는 경우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대기상태에 있는 이체의뢰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신청이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7호, 제8호 및 제11호에 따른 전문 입력의 종료시각까지 남아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자금이체 신청 처리의 유보)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가 원활히 종료될 수 있도록 차액결제자료 입력 후부터 차액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신청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제42조(자금이체 신청의 취소) 이체의뢰기관은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신청전문이 한국은행에 수신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체의뢰기관이 수취기관의 동의를 받아 취소할 수 있다.

1.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 부족, 순지급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이체신청이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2.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약자금이체를 신청한 경우

제43조(착오이체자금의 반환) 이체의뢰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수취기관이 아닌 다른 참가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그 이체자금을 수취한 참가기관은 즉시 원상회복을 위한 반대거래를 해야 한다.

제4관 전자금융공동망 연계결제

제43조의2(연계결제) 한국은행은 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여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의3(연계결제 신청) ① 금융결제원은 연계결제를 한국은행에 신청할 때 전자금융공동망 자금이체 전문에 수록된 이체의뢰기관, 수취기관, 결제금액 등이 포함된 자금이체 신청전문을 송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계결제 신청은 신속지급지시로만 할 수 있다.

제43조의4(연계결제 처리) ①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연계결제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체의뢰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거나, 차액결제자료 입력 후부터 차액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차액결제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연계결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한국은행은 연계결제 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금융결제원, 수취기관 및 이체의뢰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제43조의6(입금불능자금 반환) 수취기관은 연계결제 신청전문의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해당 금액을 수취인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체의뢰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제5관 콜자금 이체

제44조(콜자금의 결제) 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으로부터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을 위한 전문을 수신한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이 <별표2>에 따른 상환시점을 지정하여 콜자금을 공급한 경우 그 전문의 내용에 따라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제2항의 콜자금 상환과 제1항의 콜자금 공급이 같은 참가기관 간에 같은 날 이루어지는 1일물 이상 콜거래에 대하여 콜자금 공급기관이 상환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환과 공급을 위한 자금이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가기관은 오전 및 오후 반일물 콜자금의 공급을 위한 자금이체를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⑤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과 관련한 자금이체 신청의 처리절차, 대기, 처리의 유보, 취소 및 착오이체자금의 반환에 관해서는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관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제45조(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신청)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

은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지정하여 한국은행에 자금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신청의 처리 등)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신청을 신속지급지시로 처리하며, 처리절차, 대기, 처리의 유보 및 취소에 관해서는 제37조와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7조(처리결과의 통지) 한국은행은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수취기관과 이체의뢰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제48조(입금위임의 성립) 수취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47조에 따라 자금이체 신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체의뢰기관이 수취기관에 해당 수취인계좌에 이체금액을 입금할 것을 위탁하고 수취기관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취기관은 즉시 해당 금액을 수취인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49조(입금사항에 대한 조회) 수취기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전문의 기재사항 오류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금액을 수취인계좌에 입금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이체의뢰기관에 조회해야 한다.

제50조(입금불능자금의 반환) 수취기관은 제49조에 따라 이체의뢰기관에 조회한 결과 수취인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즉시 이체의뢰기관에 이체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51조(수취기관의 수수료 청구) 수취기관은 이체의뢰기관에 입금업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관 증권·대금 동시결제

제52조(대상거래) 한국은행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참가기관 간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한다. 다만, 제4호 및 제8호의 거래는 거래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참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참가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밖에서의 채권 발행 및 매매거래
2. 증권시장 밖에서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3. 증권시장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결제대리인을 포함한다)간의 증권 매매거래
4.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담보콜거래

5. 어음 매매거래
6.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및 매매거래
7.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거래
8. 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매매거래
9. 증권시장에서의 채권(債券) 매매거래
 - 가. 한국거래소가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는 채권 매매거래
 - 나. 한국거래소가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채권 매매거래
10.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매매 및 상환거래

제52조의2(차금결제대금) 한국은행은 제52조제9호의 거래에 따른 결제 시 증권을 차감한 결과 결제할 증권의 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증권·대금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만 결제할 수 있다.

제53조(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결제) 한국은행은 제52조 각 호의 거래 중 거래대금(이하 이 관에서는 “대금”이라 한다)을 참가기관별로 차감하여 결제하거나 동일 증권에 대한 연속된 여러 건의 개별거래를 하나의 결제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제54조(대금이체 신청자료의 전송) ① 한국예탁결제원은 제52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 및 10호의 거래에 따른 대금이체를 한국은행에 신청할 때 한국은행에 결제번호, 결제금액, 수취기관 등이 포함된 결제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② 한국거래소는 제5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대금이체를 위해 한국은행에 결제회원, 결제금액 등이 포함된 결제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③ 제52조제9호가목의 거래는 제1항을, 제52조제9호나목의 거래는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55조(대금이체신청의 처리) 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대금이체 신청을 신속지급지시로 처리하며 처리절차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거래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대금이체 신청은 제52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매입대금을 이체하는 즉시 처리한다.

제56조(대기파일의 관리) ① 제55조제1항의 대금 이체신청이 대기파일에 수록된 경우 대금이체신청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대기파일에 수록된 대금이체신청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상태에 있는 증권대금이체신청 중 금융결제국장이 별도로 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한국은행이 제3장에 따라 일중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증권을 제58조의2에 따른 일중RP 대상기관으로부터 매수한 다른 참가기관이 해당 증권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이체신청인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시점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대금이체신청의 취소) 참가기관은 대금 이체신청이 한국은행에 수신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참가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 부족 등으로 대금 이체신청이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처리결과통지) ① 한국은행은 대금이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될 때에는 입금정보를, 대금 이체신청이 대기상태가 될 때에는 대기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한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금이체 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한다.

제3장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 지원

제58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약정) ① 금융업무실장은 시장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방식으로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때에는 대상기관(이하 “일중RP 대상기관”이라 한다)과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일중RP 대상기관에게 제1항의 약정 외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3(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한도) ① 한국은행의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은 일중RP 대상기관이 보유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대한 지원한도는 한국거래소에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을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중RP 대상기관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일 및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금융업무실장이 정한다.

제58조의4(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증권)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을 위한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의 대상증권(이하 “매매증권”이라 한다)은

시장규정 제4조의 증권 중에서 한국은행이 해당 영업일에 전영업일의 시장매매가격, 담보증권가액 인정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참가기관에게 한은 금융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증권을 말한다.

제58조의5(담보증권가액 인정비율)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을 위한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의 담보증권가액 인정비율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의 담보인정비율을 준용한다.

제58조의6(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① 시장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금액은 관련 매매증권의 시장가격에 제58조의5에 따른 담보증권가액 인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금액은 일중 RP 대상기관이 그 매매증권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결제금액(이하 “매수증권 결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일중RP 대상기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금이체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일중에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을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 지원방식: 한국은행과 일중RP 대상기관 간에 미리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매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을 받는 방식

2. 건별 지원방식: 증권의 매수거래 건별로 한국은행에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중RP 대상기관이 매수한 증권이 매매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일중RP 대상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⑤ 한국은행은 제4항에 따라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승인을 하는 즉시 매수증권의 결제금액과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금액의 차액(이하 “결제준비금”이라 한다)을 해당 일중RP 대상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서 차기한다.

⑥ 한국은행은 제5항에 따라 결제준비금을 차기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매매증권의 대체결제를 의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체결제 결과를 접수하며,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금액과 차기한 결제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일중RP 대상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 대기하고 그 즉시 제2항에

다른 자금이체를 처리한다. 다만,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과 제58조의7 제2항제2호의 방식으로 한국거래소의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상환이 연계되어 처리되는 경우에는 일중RP 대상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 대기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한국은행을 권리자로 하는 증권의 대체결제를 요청한다.

⑦ 한국은행은 매수증권 결제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중RP 대상기관의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58조의7(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상환) ① 한국은행은 일중RP 대상기관에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방식으로 지원한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일중에 무이자로 하여 지원 건별로 전액 상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금액 전부는 제2항 각호의 방식으로 일중에 상환받아야 한다.

② 한국은행이 일중RP 대상기관에 지원한 일시 결제부족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상환받으며, 이에 따른 업무처리시간 및 세부처리절차는 금융결제국장이 정할 수 있다.

1. 신청에 따른 매매증권의 환매도: 일중RP 대상기관의 상환신청에 따른 매매증권의 환매도를 통해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회수한다.
2. 증권매수거래 결제대금 차기 상환: 매매증권을 일중RP 대상기관이 다른 참가기관에 매도한 경우 매수기관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차기하여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회수한다.
3. 지정시각 자동상환: 지정시각에 일중RP 대상기관(한국거래소를 제외한 다)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 일시 결제부족자금 상환에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경우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회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환처리가 일중RP 대상기관의 자금부족 등으로 대기처리된 상환거래는 제외한다.
4. 상환마감시각 및 상환마감시각 이후 자동상환: 일중RP 대상기관이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일시 결제부족자금 상환마감시각 전에 지원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일시 결제부족자금 상환마감시각부터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 입력 종료시각까지 해당 일중RP 대상기관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 및 일반당좌예금계좌에서 차기하는 방식으로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회수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상환받는 즉시 한국예

탁결제원에 해당 일중RP 대상기관을 권리자로 하는 증권의 대체결제를 요청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영업일 중에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중RP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에 따른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환매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⑤ 일중RP 대상기관이 제4항에 따른 매매증권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한국은행의 매매증권 처리에 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시 결제부족자금 미상환금액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에 따른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은 한국은행에 귀속한다.

⑥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상환받는 경우 일중RP 대상기관의 상환대상거래가 여럿인 때에는 금융결제국장이 상환대상거래의 선정 및 처리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제58조의8(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거래 및 상환거래의 우선처리) ① 일중RP 대상기관의 다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한 신속지급지시 또는 보통지급지시가 대기과일에 수록되어 있더라도 결제전용당좌예금 잔액이 결제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거래를 다른 지급지시보다 우선처리할 수 있다.

② 일중RP 대상기관의 다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한 신속지급지시 또는 보통지급지시가 대기과일에 수록되어 있더라도 결제전용당좌예금 잔액이 일시 결제부족자금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결제부족자금 상환거래를 다른 지급지시보다 우선처리할 수 있다.

제58조의9(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의 기록·관리) ① 금융업무실장은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의 최초거래와 환매거래에 관한 증권 및 대금의 결제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 및 대금의 결제내역이 기록된 때에는 일중RP 대상기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파산관재인을 포함한다)은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의 최초거래와 상환거래의 결제를 해제·해지·취소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제4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제1절 순이체한도

제59조(순이체한도의 설정대상거래) 규정 제19조제1항의 순이체한도 설정대상거래는 이 세칙 제32조 각 호의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제4호, 제7호, 제9호 및 제11호의 거래와 제1호, 제3호, 제8호의 거래 중 차액결제참가기관 간 지급지시(지급승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로 한다.

제60조(미결제 순이체액의 계산기간) 규정 제19조제2항의 미결제 순이체액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영업일 차액결제시점(차액결제를 지연시킨 차액결제참가기관의 경우 그 차액결제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이전에는 전 영업일 오전 0시부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다만, 국가간공동망의 경우에는 국가별 시차를 고려하여 당일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개시시점부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로 한다.
2. 제1호의 차액결제시점(차액결제를 지연시킨 차액결제참가기관의 경우 그 차액결제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후에는 그 영업일 오전 0시부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 다만, 국가간공동망의 경우에는 국가별 시차를 고려하여 익일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개시시점부터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까지로 한다.

제61조(순이체한도의 설정) ① 제32조 각 호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차액결제참가기관은 규정 제19조제1항의 순이체한도를 과거 순이체액 규모 및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담보증권 사용 또는 처분, 제64조에 따른 담보증권금액의 계산 또는 제69조에 따른 현재가치의 평가 결과 담보증권금액이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담보증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금융업무실장은 해당 기관의 순이체한도를 부족한 금액만큼 감축할 수 있다.

③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순이체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차액결제참가기관에 순이체한도 설정대상거래의 지급지시를 송신할 수 없다.

④ 금융결제원은 제3항과 관련하여 순이체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62조(순이체한도의 변경)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신규 설정 또는 증액 신청

에 대해 규정 제21조에 따른 담보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순이체한도의 신규설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해당 기관과 금융결제원에 통보한다.

제63조(순이체한도의 관리)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금융결제원에 조회함으로써 순이체한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 초과로 지급지시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은행과 해당 거래의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한도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절 담보증권

제64조(담보증권금액의 계산) ① 규정 제21조제3항제2호의 순이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차액결제 대상거래에 대하여 차액결제참가기관이 제공해야 할 담보증권금액은 한국은행이 매년 1월과 7월 각각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중 교환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그 다음 달부터 6개월 간 적용한다.

② 규정 제21조제3항제2호의 차액결제시점별 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은 차액결제시점이 동일한 각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교환순수취·순지급금액을 합산한 결과 그 금액이 교환순지급으로 나타난 영업일의 교환순지급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신규 참가한 차액결제참가기관이 있을 경우 금융업무실장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담보증권금액의 계산 대상기간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4조의2(담보대상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한국은행이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증권금액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을 것
2. 원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3. 이율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장금리 또는 물가에 연동되어 있을 것. 다만, 이율은 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규정 제21조제1항의 차액결제이행을 위한 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후순위채권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로 발행된 증권

제65조(담보증권의 제공시기) ① 각 차액결제참가기관은 규정 제21조에서 정한 금액(이하 “필요담보증권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담보증권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점까지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1. 규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담보증권은 순이체한도의 신규 설정 또는 증액 신청시점
2. 규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증권은 이 세칙 제64조제1항의 담보증권금액 계산 월의 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담보증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담보로 사용함으로써 담보증권금액이 필요담보증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차액결제참가기관에 대해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부족한 담보증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제66조(담보증권의 실물제공생략)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차액결제참가기관이 한국은행 앞으로 질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증권의 실물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담보인정금액의 산정) ① 담보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은 <별표4>에 따라 담보증권의 해당 시장가격 또는 액면금액(할인발행인 경우 발행금액을 의미한다)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규정 제21조제4항의 제1그룹에 속하는 증권은 각 참가기관별로 담보인정금액 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담보증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담보로 사용함으로써 제1그룹에 속하는 증권은 담보인정금액이 담보인정금액 총액의 40% 이하가 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차액결제참가기관에 대해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부족한 제1그룹 담보증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제68조(담보증권의 반환)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제공한 담보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이 필요담보증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담보증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업무실장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기관에 담보증권을 반환한다.

제69조(담보증권의 평가 및 추가 요구) 금융업무실장은 담보증권의 현재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담보인정금액이 필요담보증권금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에 담보증권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담보증권의 처분) ①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담보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장에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보증권을 시장에서 매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수익률은 해당 증권의 그날 중 시장수익률(시장수익률이 없을 경우 감독기관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수익률 등으로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매입금액의 계산 등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제71조(공동분담의 결정) 규정 제23조에 따라 결제부족자금을 공동분담하게 될 경우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참가기관별 분담금과 결제시점을 정하여 해당 차액결제참가기관과 금융결제원에 통보한다.

제72조(공동분담에 따른 차액결제) ① 한국은행으로부터 제71조에 따른 통보를 접수한 차액결제참가기관은 지정결제시점까지 해당 분담금을 자신의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금융결제원은 차액결제참가기관별 분담금을 포함한 차액결제청구서를 제작성하여 지정결제시점까지 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차액결제 요청을 접수한 경우 그 차액결제청구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4절 차액결제대행

제73조(차액결제대행의 신청) ①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차액결제를 대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차액결제대행 신청서와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차액결제위탁기관과 체결한 차

액결제대행계약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74조(차액결제대행의 승인기준) ① 규정 제25조제3항제4호 및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직전 분기말(직전 분기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분기말로 한다) 기준으로 차액결제대행 신청기관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총자본비율(신설기관의 경우 차액결제대행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말의 예상비율로 한다)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2. 신청일 직전월(직전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로 한다) 기준으로 차액결제대행 신청기관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신설기관의 경우 차액결제대행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 마지막 월의 예상비율로 한다)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3. 차액결제대행계약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차액결제대행계약에 따른 개별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가 동 은행의 차액결제대행 신청일 직전 분기말(직전 분기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분기말로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금액(신설기관의 경우 차액결제대행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말의 예상금액으로 한다)의 10% 이하일 것
5.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② 차액결제대행은행 또는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인수·합병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차액결제대행의 승인) ① 금융결제국장은 제73조에 따른 차액결제대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요건 및 제74조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제73조제2항에 따른 차액결제대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대행 철회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차액결제대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금융결제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제74조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승

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충족방안의 강구 요구, 충족에 필요한 유예기간 부여, 차액결제대행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제73조제2항에 따른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표 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금융결제국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 차액결제대행은행은 <별표 3> 제9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변경예정일 1주일 전까지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제77조(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이체한도 설정·변경)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이체한도의 설정·변경과 제재 등에 대해서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과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이체한도는 차액결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앞으로 통보한다.

제78조(차액결제위탁기관 담보증권의 전질) 차액결제대행은행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담보증권을 제공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차액결제위탁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담보 중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적격담보증권이 있는 경우 차액결제위탁기관 분으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증권금액 범위에서 이를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된 담보증권은 차액결제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9조(차액결제대행은행의 통보상황) 규정 제30조에서 “총재가 정하는 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말한다.

1.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대행은행으로부터 일중에 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후 그날 중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대행은행으로부터 1일 이상 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80조(차액결제대행업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금융결제국장은 규정 제31조에 따른 결제리스크 감축방안 등의 조치를 차액결제대행은행과 차액결제위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 사유)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차액결제 직접 참가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차액결제대행은행이 규정 제43조에 따라 한은금융망 이용의 제한 또는 중지, 관련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로 인해 차액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급격

한 유동성 악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차액결제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2조(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 ① 차액결제위탁기관은 제 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결제 직접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차액결제 직접 참가의 기간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제59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차액결제참가기관으로 본다.

제5장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제83조(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① 규정 제37조제1항에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이란 <별표6>과 같다.

②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공동으로 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추가지침 등을 제1항의 원칙을 보충하는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4조(평가주기) 규정 제38조제2항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시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기평가는 수시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85조(평가방법) ① 규정 제38조에 따른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금융결제국장이 실시한다.

② 금융결제국장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평가사항별로 그 충족수준을 충족, 대체로 충족, 일부 충족, 미충족, 적용불가의 5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기술해야 한다.

③ 금융결제국장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그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자체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평가결과의 공표) 한국은행은 규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7조(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요청) ① 규정 제39조제1항에서 “총재가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평가결과가 일부 충족 또는 미충족인 경우를 말한다.

② 한국은행은 평가결과가 충족 또는 대체로 충족에 해당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평가항목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정 제39조제2항에서 “내용이 기술적이거나 경미한 경우”란 평가결과가 일부 충족에 해당하거나, 충족 또는 대체로 충족에 해당되더라도 세부 평가항목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8조(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통보) 금융결제국장은 규정 제40조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통보와 관련하여 통보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9조(긴급상황시의 조치) 금융결제국장은 규정 제41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운영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결제국장은 동 사항을 금융업무실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90조(운영기관협의회)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관련 책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91조(한은금융망 참가·이용기관에 대한 제재) ① 한국은행은 참가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환기,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은금융망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때에는 주의환기, 시정요구 등의 조치 없이 일반자금이체를 제한할 수 있다.

1. 규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액결제시점에서 결제전용당좌예금잔액 부족으로 결제를 지연시킨 경우
2. 규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
3. 규정 제13조제5항과 제36조의 자료를 한국은행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규정 제40조제2호에서 정한 긴급상황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5.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송신권한자 외의 자가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전문을 송신한 경우
6. 제21조, 제43조 또는 제43조의6을 위반하여 착오이체자금 또는 수취인 계좌 입금불능자금의 반환을 위한 반대거래를 즉시 하지 않은 경우
7. 제48조와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입금통지를 수신하였음에도 수취인계좌에 즉시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불
능자금을 즉시 이체의뢰기관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8. 제61조제3항과 관련하여 순이체한도 초과로 지급지시가 취소되는 거래
를 발생시킨 경우
9. 제65조제1항에서 정한 시점까지 담보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 제13조제3항제3호와 같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한은금융망 운
영시간을 연장시킨 경우
11. 그 밖에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 또는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참가기관이 제재조치를 받은 시점
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
였을 때에는 그 발생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의 제재조치를 받은 때부터 연간단위로 연속
하여 발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자금이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참가
기관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1주일 전에 미리 예고한다.

1. 2회 발생: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위규내용 및 제재사실
직접 통보
2. 3회 발생: 제1호의 조치와 1일간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간 일반자
금이체의 제한
3. 4회 발생: 제1호의 조치와 1주일 이내에서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 일반자금이체의 제한
4. 5회 발생: 제1호의 조치와 1개월 이내에서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 일반자금이체의 제한
5. 6회 이상 발생: 한은금융망 가입약정 또는 관련약정 해지

③ 참가기관이 합병 등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금융업무실장이 별도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발생횟수를 계산한다.

제9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관련 제재)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및
상환 등과 관련하여 시장규정 제51조에 따른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의환기 및 경위서 제출요구: 약정기간 중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결제
일 중 지연상환한 횟수가 1회째 또는 2회째인 경우
2. 상환지연 등에 따른 거래한도 감축: 약정기간 중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결제일 중 지연상환한 횟수가 3회째인 경우 최초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
원한도의 50%에 해당하는 한도를 감축
3. 일시 거래 정지

가. 약정기간 중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결제일 중 지연상환한 횟수가 4회째인 경우

나. 약정기간 중 해당일 중 상환을 불이행한 1회째인 경우

다. 재무상태 악화 및 영업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라. 그 밖에 증권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약정 해지

가. 인·허가 취소, 영업양도, 합병, 해산, 파산, 폐업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약정기간 중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결제일 중 지연상환한 횟수가 5회째인 경우

다. 약정기간 중 해당일 중 상환을 불이행한 2회째인 경우

라. 관련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거래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킨 경우

5. 결제리스크 관리 미흡에 따른 거래한도의 감축: 일중RP 대상기관이 규정 제37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국제기준에서 정한 결제리스크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92조(CLS시스템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의 예외) ①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9조와 제45조제1항에 따라 CLS은행의 한은금융망 가입 및 이용에 대하여는 한국은행과 CLS은행 간에 체결하는 한은금융망 이용약정에서 따로 정한다.

② CLS은행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이체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84조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CLS은행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하여는 규정 제18조제2호, 제33조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CLS은행에 대한 감독 및 주된 감시책임을 지는 중앙은행과 관련국 중앙은행간 협의기구 등의 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감독이나 감시활동으로 갈음한다.

④ 제88조와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3조제2호와 제5호의 감시업무에 대하여는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과 CLS은행 간에 체결하는 한은금융망 이용약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93조(위임) ①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결제국장과 금융업무실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한은금융망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회선, 보안대책 및 장애복구 등 전산업무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IT전략국장이 정한다.

③ IT전략국장이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절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결제국장 및 금융업무실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칙 <200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은행금융결제망운영세칙」(1994.7. 21. 금기 5980-25 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한국은행금융결제망운영세칙」 및 관련 약정에 따라 취급된 업무는 이 세칙에 따라 취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2. 21>

이 세칙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2>

이 세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25>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24>

이 세칙은 200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0>

이 세칙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6>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호 내지 제7호의 시행일은 금융결제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4. 6. 24>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52조 <별표2>의 시행일은 금융결제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의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한은금융망 비상계획”으로 동 대책을 갈음한다.

부칙 <2004. 9. 24>

이 세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별표1>과 제28조제2항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3. 14>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1>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4>

이 세칙은 200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0>

이 세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9>

이 세칙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6>

이 세칙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4>

이 세칙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25>

이 세칙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9>

이 세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9>

이 세칙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22>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6>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결제정책팀-425(2009.4.20, 총재결재)에 의하여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간

에 체결된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이용약정은 규정 제7조, 제16조 및 이 세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신한은행금융망 이용약정으로 본다.

부 칙 <2009. 5. 25>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6>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시행일은 금융결제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0. 1. 26>

이 세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4>

이 세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3>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시행일은 금융결제국장이 정한다.

부 칙 <2011. 2. 22>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제2항은 금융결제국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8>

이 세칙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3>

이 세칙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7>

이 세칙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7호, 제40조제3항, 제52조제10호 및 제54조제1항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1>

이 세칙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 제58조의5, 제58조의6제1항 단서, 제67조 및 <별표 4> 제2호, 제6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금융결제국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6제1항 단서는 결제정책팀-392(2013.7.25, 국장결재)에 따라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

<제67조 및 <별표 4> 제2호, 제69조는 결제운영팀-657(2013.9.4, 국장결재)에 의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

부 칙 <2014. 3. 27>

이 세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부 칙 <2016. 2. 25>

이 세칙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4>

이 세칙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7>

이 세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2항, 부칙 <2015. 11. 26> 제2조(유효기간) 삭제, <별표 4>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용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제20조제1항 및 제42조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결제정책팀-267(2020.5.6, 총재결재)에 의하여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

제2조(유효기간) 제64조의2 및 <별표 4> 중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사항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20. 6. 25>

이 세칙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결제정책팀-667(2020.10.5, 총재결재)에 의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제2조(경과조치) <별표 5>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 당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제6조제1항에 따

른 가입기준 충족여부 재심사 시부터 <별표 5> 제4호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3. 25>

이 세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삭 제

부 칙 <2023. 1. 16>

이 세칙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8>

이 세칙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1>

이 세칙은 202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27>

이 세칙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25>

이 세칙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 중 규정 제21조제1항제11호와 관련된 사항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9>

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단위: 원

구 분		수수료 ¹⁾			비고
		16:00 이전	16:00 후~ 17:30 이전 ²⁾	17:30 후 ³⁾	
정액수수료 (월간) ⁴⁾		100,000			
건 당 수 수 료	원 화 자 금 이 체	참가기관간 자금이체 ⁵⁾	200	700	4,000
		참가기관의 한국은행내 계좌간 이체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콜자금 공급			
		콜자금 상환			
		증권·대금 동시결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관련 자금이체			
	CLS결제자금 이체	2,000	2,500	5,500	
	외 화 자 금 이 체	참가기관간 외화자금이체	200	700	4,000
		참가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			
국 공 채 등 거 래 ⁶⁾	부기등록신청	200	700	4,000	
	국공채 등의 등록변경(양수도)신청				
기 타	취 소 ⁷⁾	1,000	1,000	4,000	

- 주: 1.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다만 17:30 후에 결제가 완료된 자금이체업무의 이용수수료는 결제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2. 다음 각 목의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체의 경우에는 17:3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
- 가. 일중당좌대출 상환: 17:50 (18:30)
- 나. 자금조정예금 입출금: 18:00 (18:40)
- * () 안은 CLS결제와 관련된 경우로서 10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다음 해 3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적용
3. 한국은행 전산장애 및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사유로 17:30 후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6:00 후~17:30 이전 시간대 수수료를 적용. 다만, 한국은행 전산장애의 경우 장애가 16:00 이전에 발생하여 17:30 후에 복구된 때에는 전산복구 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이체에 대하여 16:00 이전 수수료를 적용
4. 신규 가입시에는 가입한 날로부터 일할계산하고, 탈퇴시에는 탈퇴일 전영업일까지 일할계산. 다만 참가기관 중 전용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주전산기 접속기관이 전용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에 대하여는 적용 면제
5. 연계결제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
6.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 및 국채의 발행·상환
7. 제5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취소한 이체신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

<별표 2>

한은금융망 지정처리시점

구 분		처리시점
차액결제	지로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국가간공동망	11 : 00
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14 : 00
콜자금 상환	오전 반일물	14 : 05
	오후 반일물	16 : 05
	1일물 이상	11 : 05
차액결제시점 예약자금이체 실행		11 : 00
외화자금 예치		16 : 00 ¹⁾

주 : 1) 일본엔화에 대한 자금예치는 익일 09:30분

<별표 3>

차액결제대행계약서 반영사항

1. 차액결제대행업무의 범위와 한도
2.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의무
3.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대행은행에 대행계약한도 이상의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4. 차액결제금액에 대한 당사자간 정산에 관한 사항
5.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유동성 지원·상환 및 미상환시 대행은행의 순이체한도 감액 조치 관련 사항
6. 차액결제금액의 납입을 지연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지연배상 및 담보처분에 관한 사항
7.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차액결제위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중 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에 전질할 수 있다는 취지
8.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이체한도 적정수준 유지 및 관리 의무
9. 차액결제대행계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사유
10.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 참가가능 취지
11. 차액결제대행계약은 한국은행의 승인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

담보인정비율

1.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증권 중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잔존만기 및 원리금지급방식별로 시장가격에 다음의 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개 이상의 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장가격 산정 기준일 직전 영업일(이 날의 가격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전(前)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

증권	신용등급 ¹⁾	잔존만기 ²⁾³⁾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증권	-	98 (98)	97 (96)	96 (95)	95 (94)	93 (92)
규정 제21조제1항제9호의 증권 ⁴⁾	-	96 (96)	95 (94)	94 (93)	93 (92)	92 (91)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권 ⁴⁾	AAA	96 (96)	95 (94)	94 (93)	93 (92)	92 (91)
	AA+~ AA-	95 (95)	94 (93)	93 (92)	92 (91)	91 (90)
	AAA	95 (95)	94 (93)	93 (92)	92 (91)	91 (90)
규정 제21조제1항제10호의 증권 ⁴⁾	AAA	95 (95)	94 (93)	93 (92)	92 (91)	91 (90)
	AA+~ AA-	94 (94)	93 (92)	92 (91)	91 (90)	90 (89)
	AAA	94 (94)	93 (92)	92 (91)	91 (90)	90 (89)
규정 제21조제1항제8호의 증권 ⁴⁾	AAA	94 (94)	93 (92)	92 (91)	91 (90)	90 (89)
	AA+~ AA-	93 (93)	92 (91)	91 (90)	90 (89)	89 (88)
	AAA	90 (90)	88 (87)	87 (86)	86 (85)	85 (84)
규정 제21조제1항제11호의 증권 ⁴⁾⁵⁾	AAA	90 (90)	88 (87)	87 (86)	86 (85)	85 (84)
	AA+~ AA-	85 (85)	83 (82)	82 (81)	81 (80)	80 (79)

주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1인 이상으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 그 중 최저등급을 말한다.

2) 잔존만기는 시장가격 평가일 기준

3) 담보인정비율은 이표채 기준, ()는 할인채 등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증권의 경우

4)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5) 금융회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회사. 단, 비금융지주회사는 제외) 및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

2.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권 중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액면금액(할인발행인 경우 발행금액)의 80%, 제11호의 증권 중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액면금액(할인발행인 경우 발행가액)의 70%를 적용한다.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1.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¹⁾	가. 은행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나.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 - 1종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 2종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라. 보험회사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마. 그 밖의 기관 :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중 금융결제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2. 예상 이용건수	가입 이후 1년간 월평균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3. 전담인력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²⁾ 사용자 2명, 단말기 ³⁾ 사용자 2명 등 총 4명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겸무하지 않아야 한다.
4. 업무지속 능력	장애 또는 재해 등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2곳 이상의 장소(건물 기준)에 설치하여야 한다 ⁴⁾ .

- 주 : 1)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기준에 명시된 재무건전성 비율 등은 한은금융망 가입신청일 직전 해당 기관 등이 공시한 것(신설기관의 경우 한은금융망 가입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말의 예상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 2)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중 권한이 부여된 자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 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 3) 한은금융망 이용을 위해 한국은행에 등록된 참가기관의 PC를 말한다.
- 4)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 운영절차」에 따라 공중망 회선으로 연결한 단말기도 포함한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항 목	내 용
일반조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적 기반 : 운영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등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관련 법률과 합치할 것 2. 지배구조 : 공익에 합치되면서도 참가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것 3.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 : 법률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신용리스크 : 참가기관에 대한 신용리스크 노출규모와 자신의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효과적으로 측정,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충분한 재무자원을 보유할 것 5. 담보 :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관리하기 위한 담보를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시장리스크가 낮은 담보로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것 6. 증거금 : 참가기관에 대한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증거금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7. 유동성리스크 : 참가기관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와 자신의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를 효과적으로 측정,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충분한 재무자원을 보유할 것
결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결제완결성 : 결제일 영업종료시점까지 최종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9. 자금 결제 : 자금의 최종결제가 한국은행 예금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10. 실물 인도 : 증권의 인수도와 관련한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감시하고 관리할 것
중앙예탁기관과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중앙예탁기관 : 증권을 부동화 또는 무권화된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출 것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 2개의 연결된 채무의 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의 경우 한 채무의 최종결제는 다른 채무의 최종 결제를 조건으로 결제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채무불이행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참가기관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 : 채무불이행 발생시 운영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조치 등이 포함된 명확하고 투명한 채무불이행 처리절차를 갖출 것 14. 분리보관 및 계정이관 : 참가기관의 고객 자산 및 중앙거래당사자(CCP)에 제공되는 담보의 분리관리와 계정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및 절차를 갖출 것

<p>일반사업 및 운영 리스크 관리</p>	<p>15. 일반사업리스크 :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사업리스크를 파악, 감시 및 관리하고 충분한 재원을 보유할 것</p> <p>16. 보관 및 투자 리스크 : 운영기관 자체 보유자산 및 참가기관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투자대상 금융상품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제한할 것</p> <p>17. 운영리스크 : 운영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부 및 외부 원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보안성과 운영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p>참가</p>	<p>18. 참가기준 : 리스크를 고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참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p> <p>19. 계층적 참가제도 :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를 파악,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p> <p>20.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 : 국내외 다른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연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p>
<p>효율성</p>	<p>21. 효율성 및 실효성 :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제공할 것</p> <p>22. 통신절차와 표준 : 국제적으로 수용되거나 이에 준하는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할 것</p>
<p>투명성</p>	<p>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데이터 공개 :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이를 공개하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로 인해 참가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 수수료 등 중요 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p>